



山林税制 안내

산림경영상 알아야 할 임업세제와 관련한
관계법규를 발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法 人 稅

課 稅 對 象

各 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하여 賦課

法人税法 第2條

第2條(課稅所得의範圍) ①法人税는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所得에 對하여 이를 賦
課한다.

1. 各 事業年度의 所得

2. 清算所得

②非營利內國法人과 外國法人에 있어서
는 第1항의 規定에 木拘하고 清算所得
에 對한 法人税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免 除 對 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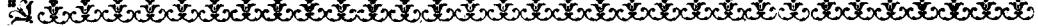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

로이造林한 山林과 採種林, 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造林한期間이 5年以
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
한所得

租減法 第38條

第38條(山林開發所得에 對한 所得稅 등의
免除) ①內國人이 山林法에 의한 营林計
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
保護林으로서 그가造林한期間이 5年
以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
生한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
税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의 免除
를 받고자 하는 内國人은 課稅標準申告
書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증자소득(법인세법 제8조)
- 세율

구분	과세표준	금액	税率
上場法人	8千萬원 以下	과세표준액의 100	
	8千萬원 超過	분의 20 1千6百萬원 + 8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0	
非上場法人	8千萬원 以下	과세표준액의 100	
	8千萬원 超過	분의 20 1千6百萬원 + 8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33	
非營利法人	8千萬원 以下	과세표준액의 100	
	8千萬원 超過	분의 20 1千6百萬원 + 8千萬원을 超過하는 金額의 100分의 27	

* 法人税法 第22條 第1項, 2項 및 第4項

○ 손비인정

인건비, 운영비등 주로 당해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所 得 税

課 稅 對 象

個人의 所得發生時 賦課

所得稅法 第24條 第1項

第24條(山林所得) ① 山林所得은 造林期間이 5年以上인 林地의 林木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으로 한다.

免 除 對 象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採種林, 保安林 및 天然保護林 包含)으로서 그가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것을 伐採 또는 讓渡時 發生하는 所得은 所得稅 免除

租 減 法 第38條

第38條(山林開發所得에 對한 所得稅 等의 免除) ① 内國人이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과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으로서 그가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 것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의 免除를 받고자 하는 内國人은 課稅標準申告書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당해년도 총수입액 - 필요경비(임지를 제외한 취득에 필요한 비용 + 식립비 + 관리비 + 별채비 + 기타산림 육성·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 특별공제 150만원(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 제31조 동법 제46조)

- 세율 : 과세표준액 250만원까지는 100분의 5이며 8단계로 구분차등세율 적용(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讓 渡 所 得 税

課 稅 對 象

資產의 謂渡로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 賦課

所得稅法 第23條

第23條(讓渡所得) ①讓渡所得은 當該年度에 發生한 다음 각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度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產에 관한 權利의 讓度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3. 第1號 및 第2號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產(이하 “기타 資產”이라 한다)의 讓度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

免 除 對 象

’86. 12. 31現在 山林地를 所有한 者가
’91. 12. 31까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인 自耕 農民에게 그 所有保全林地 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地에 造林한 後期間이 5年 以上인 造林地(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 9萬坪 以內를 譲渡時

租減法 第67條의 6

第67條의 6 (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民 등에 대한 譲渡所得稅 免除) ① 다음 각호에 該當하는 農地·草地·山林地(이하 “農地 등”이라 한다)를 1986年12月31日 現在 所有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中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耕 農民(이하 “自耕 農民”이라 한다)에게 그 所有農地 등을 1991年 12月31日까지 譲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譲渡所得稅를 免除한다.

1. 相續稅法 第11條의 3 第1項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農地 등
2. 都市計劃法 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商業地域 및 工業地域 외에 所有하는 農地 등

※ 相續稅法 第11條의 3 第1項(農地·

草地·山林地의 相續控除)

① 1 ~ 2 省略

3.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 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期間이 5年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包含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액(양도가액) - 필요경비(양도차익)
-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23조)

- 세율: 과세표준액 30백만원까지는 100분의 40이며, 5단계로 구분 차등세율 적용(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特 別 附 加 稅

課 稅 對 象

○法人이 土地, 建物과 不動產에 關한 權利(이하 土地 등 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한 譲渡差益에 對하여 賦課
※ 譲渡: 土地 등에 對한 登記에 關係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對한 現物出資 등으로 그 土地 등이 有償으로 事實上 移轉된 것

法人稅法 第59條의 2

○讓渡差益은 譲渡價額(讓渡價額과 取得價額 不分明時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市價)에서 - 取得價額 - 土地 등 譲渡하기 為한直接 支出費用

免 除 對 象

○破産宣告에 의한 處分으로 發生한 所得

○讓渡時까지 8年 以上 繼續하여 當該法
人이 耕作한 土地로서 農地稅의 課稅對
象이 되는 土地를 都市計劃 및 換地處
分 豫定日부터 1年 以內의 土地를 讓
渡하여 發生한 所得
○法人이 直接 耕作하던 農地의 交換, 分
合으로 發生한 所得

——法人稅法 第59條의 3——

業地에 새로造林한期間이 5年 以上
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 採種
林, 天然保護林 包含)

※ 控除限度額: 1億 1千萬 원

② 保全林地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
業地에 새로造林한期間이 5年 以上
인 林木(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

——相續稅法 第11條의 3, 4——

○ 세액계산

- 과세표준: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
액 - 양도시 직접 지출비용)

- 세율

○ 미등기 양도토지: 과세표준액(양도
차익)의 40%

○ 기타양도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25%
(법인세법 제59조의 4)

相 繼 稅

課 稅 對 象

相續財產에 對하여 賦課

——相續稅法 第2條——

第2條(相續稅課稅物件의 범위) 被相續人
이 國내에 住所를 둔 때에는 相續財產(被
相續人이 遺贈한 財產 및 被相續人の 死
亡으로 인하여 効力이 發生하는 贈與財產
을 包含한다. 이하같다)의 全部에 대하여
相續稅를 賦課한다. 被相續人이 國내에
有 住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國내에 있는
相續財產에 대해서만 相續稅를 賦課
한다.

控 除 對 象

① 保全林地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

第11條의 3 (農地 · 草地 · 山林地의 相續控
除)

① 1 ~ 2 省略

3.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造林한期間이 5年 以上인 9
萬坪 以內의 山林地(保安林 · 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包含한다)

② 第1項의 控除額은 第5條, 第11條 및
第1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第11
條 第1項 第4號 및 第5號와 第11條의
2 第2項 단서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包含하지 아니한다)을 合하여 1億 1千
萬원을 限度로 한다.

第11條의 4 (山林相續控除) 國내에 住所를
둔 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된
境遇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相續人の 相
續財產 價額에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保
全林地안의 山林中 營林計劃 또는 指定
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造林한 山林으
로써造林期間이 5年 以上인 山林(保安
林, 採種林, 天然保護林을 句含한다)
의 價額이 包含되어 있을 때에는 第4條
의 課稅價額에서 이를 控除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피

상속인의 장례비 200만원 - 채무액 - 기초공제 1천만원 - 인적공제 - 주택공제 - 농지, 초지, 산림지 공제 - 임목공제 (상속세법 제12조)

- 세율 : 과세표준 300만원까지는 100분의 5이며 8단계로 구분 차등세율 적용 (상속세법 제14조)

贈與稅

課稅對象

贈與를 받은 贈與財產에 對하여 賦課
相續稅法 第29條의 4 第1項

第29條의 4 (贈與稅課稅價額) ① 贈與稅는 贈與를 받은 當時의 贈與財產價額의 合計額을 그 課稅價額으로 한다.

免除對象

'86. 12. 31 現在 山林地를 所有한 者가
'91. 12. 31까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인 自耕農民에게 保全林地중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地(保安林, 採種林, 天然保護林 包含)에 造林後 5年 以上인 9萬坪 以內의 山林地를 贈與時 免除
※ 營農 1子女에 贈與時도 免除

租減法 第67條의 7, 8 第1項

第67條의 7 (自耕農民이 贈與받은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

① 第67條의 6 第1項 각호에 該當하는 農地 등을 '86. 12. 31 現在 山林地를 所有한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姊妹인 自耕農民에게 그 所有 農地 등을 1915년 12月 31日까지 贈與하는 境遇에는 當該 農

地 등의 價額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第67條의 8 (營農 1子女가 贈與하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耕하는 農民이 第67條의 6 第1項 각호에 해당하는 農地 등을 直系卑屬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農에 從事하는 1子女(이하 이 條에서 "營農 1子女"라 한다)에게 贈與하는 境遇에는 當該 農地 등의 價額에 대한 贈與稅를 免除한다.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중여재산가액 - 중여재산공제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150만원, 기타친족은 100만원)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세율 : 과세표준액 150만원까지는 100분의 5이며, 8단계로 구분차등세율 적용
(상속세법 제31조의 2)

土地超過利得稅

課稅對象

遊休土地등에서 發生하는 超過利得에 對하여 賦課

土地超過利得稅法 第3條

第3條 (課稅對象) ① 土地超過利得稅는 遊休土地등으로 부터 發生한 土地超過利得에 對하여 賦課한다.

② 遊休土地등의 判定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課稅期間終了日 現在의 事實上の 現況에 의한다. 다만, 事實上の 現況이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公簿上의 登載現況에 의한다.

③課稅期間 終了日 現在 遊休土地 등에
該當하는 土地로서 當該 課稅期間중에 遊
休土地등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期間이 있
는 境遇에는 當該期間의 土地超過利得에
대하여는 土地超過利得稅를 賦課하지 않
니한다.

免 除 對 象

- 個人 : • 寺殺林, 洞有林, 軍事施設保護區
域內의 林野,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天然保護林
• 保全林地內의 林野로서 營林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
殊開發地域으로 指定된 林野(都
市計劃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
이 經過된 것은 除外)
•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地區
안의 林野
• 宗中이 所有하고 있는 林野(都
市計劃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이
經過된 것은 除外)
(土地超過利得稅法 第 8 條 第 1
項 第 7 號)

- 法人 :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 所有
하는 保全林地내의 林野로서 營林
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로부터
1年이 經過된 것은 除外)
(土地超過利得稅法 第 9 條 第 3項 第 4
號)

第 8 條(個人所有 土地중 遊休土地등의 범
위) ①個人이 所有하는 土地로서 土地
超過利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遊休土地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土地로
한다.

1 ~ 6 省略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除
外한 林野
가. 寺殺林 · 洞有林
나. 軍事施設保護法에 의한 軍事施設
保護區域안의 林野
다.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保安林 ·
天然保護林 · 採種林 · 試驗林
라. 山林法에 의한 保全林地안에 있는
林野로서 同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
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殊開發地域으로 開發된 林野 다만,
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
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
하는 期間이 經過된 林野를 除外한
다.
마.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保存地區
및 自然環境 地區안의 林野
바. 文化財 保護法에 의하여 指定된 文
化財保護區域안의 林野
사. 宗中이 所有하고 있는 林野
다만, 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
領令이 정하는 期間이 經過된 林野
를 除外한다.
아. 기타 公益上의 必要에 의하여 土
地超過利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할 相
當한 理由가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
令이 정하는 林野(未制定)

第 9 條(法人所有 土地중 遊休土地등의 범
위) ①法人이 所有하는 土地로서 土地超
過利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遊休土地等
은 그 法人이 固有業務에 정당한 事由 없
이 直接 使用하지 아니한 土地로 한다.
②省 略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土地는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の 固有業務에
直接使用하지 아니하는 土地로 본다.

1. 第8條 第1項 第1號 · 第2號 · 第6
號 및 第8號 내지 第13號에 該當하는
土地

2. 第8條 第1項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土地 외에 建築物이 定着되
어 있는 土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該
當하는 土地(住宅의 附屬土地로서 大
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除外한다)

가. 建築物의 面積등을 参考하여 大統
領令이 정하는 基準面積을 超過하는
土地

나. 建築物附屬土地의 價額에 대한 建
築物의 價額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
하는 率에 未達하는 土地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無許可 建築物
의 附屬土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農地

가. 農業을 主業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農地의 價額에 대한 1年間의 收入
金額의 北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
率에 未達하는 農地

나. 特別市 · 直割市 및 市地域의 都市
計劃區域(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除外한다)안에 있는 農地. 다만, 特
別市 · 直割市 및 市地域의 都市計劃
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
하는 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農地
를 除外한다.

4. 林野. 다만,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 所有하는 山林法에 의한 保全
林地안에 있는 林野로서 同法의 規定
에 의한 營林計劃認可를 받아 施業중
인 林野(都市計劃區域안의 林野로서 都
市計劃區域에 編入된 날부터 大統領令

이 정하는 기간(1年)이 경과된 林野
를 除外한다)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林
野(未制定)를 除外한다.

• 附則 第4條(法人이 정하는 產業備林用
林野에 관한 經過措置) 山林法에 의하여
產業備林의 所有命令을 받은法人이 이
法 施行전에 所有하는 產業備林用 林野
로서 產業備林所有基準上의 最小面積 이
내의 林野는 第9條 第3項 第4號를 適
用함에 있어서 林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
인이 所有하는 林野로 본다.

• 토지초파이득세법 시행령 제28조(주업의
기준)

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 제
9조 제3항 제3호 각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은 수입금액
(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경우
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 큰 사
업으로 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가목에 의한
주업에는 당해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을 당해 법인이 제조 생산하는 제품의 원
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등을 구
분하여 정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 : 토지초파
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법인소유 임야) ① 영 제28조 제1
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이라
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총 자산가액중 당해사업에 공여되는 자
산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3항 제4호 단서의 규정
에 의한 임야중 유 휴토지등에 해당하는 임
야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그 도시
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영 제27조 제



3 항에 규정된 기간(1년)이 경과된 임야로 한다.

○세액계산

- 과세표준 : 과세기간이 끝나는해 12/31 의 땅값(건설부장관 공시지가) -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해 1/1의 땅값(건설부장관 공시지가) -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국세청장 고시) - 개량비, 자본적 지출등(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 세율 : 과세표준액의 50%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과세기간 : 3년 단위(정상지가의 1.5배 이상 상승 지역은 1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綜合土地税

—課 稅 對 象—

'90. 1. 1부터 地籍法에 의한 모든 土地
에 대하여 賦課

地方税法 第234條의 8

第234條의 8 (課稅對象) 綜合土地税의 課稅對象은 地籍法에 의한 모든 土地로 한다.

—免 除 對 象—

- 寺刹林, 洞有林, 民統線北方地域林野, 軍事保護區域內의 林野
- 保安林, 採種林, 試驗林, 天然保護林
-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保護區域內의 林野
- 地籍法에 의한 墓地

地方税法 施行令 第194條의 8, 7

第194조의 8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법

제234조의12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사찰림, 동유림
2.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토지로서 전·담·과수원 및 대로를 제외한 토지
3.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4.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의 임야
6.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되는 노인정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만, 토지의 일부를 노인정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 194조의 7 (비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 지적법에 의한 표지

分類 課稅對象

- 보全林地內의 林野로서 營林計劃 認可를 받아 施業중인 林野와 特殊開發地域으로 指定된 林野(단, 都市計劃區域內의 林野는 除外)
- 文化財保護區域內의 林野
- 自然環境地區內의 林野
- 宗申이 所有하는 林野(90. 5. 31 이전 취득분)

地方税法 施行令 第194條의 15

○세액계산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6. 1) 현재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
- 세율 : 과세표준(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분리과세표준)에 따라

제 105 조 (부록 제 105 조)

라 세율이 상이하며,
분리과세 토지중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는 과세표준액의 0.1%, 골
프장·별장등은 과세표준액의 5%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 종합합산과세 : 주택지·나대지·잡종
지·부재지주농지·법인소유농지·영림
계획 미작성임야등은 소유자별로 합산
하여 과세표준액 5백만원 이하일 때
0.2%부터 최고 5%까지 10단계의 누
진과세(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
- 별도합산과세 : 사무실·상가·호텔·백
화점등 모든 영업용 건축물이 있는 토
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0.3%~최
고 5%까지 9단계의 누진과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 2 항)

- 분리과세
 - 농민의 자경농지·목장용지·임야중
보전임지내의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 및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단, 도시계획구역 내의
임야는 제외)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임
야, 자연환경 지구내의 임야
종종이 소유하는 임야('90. 5. 31 이
전취득)등은 0.1%
 - 골프장, 별장등 사치성 토지는 5%
 - 위의 분리과세 대상외의 토지 및 내
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공
장용지는 0.3%
-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 3 항)

取 得 稅

課 稅 對 象

- 不動產, 車輛, 重機, 立木 또는 航空機
의 取得

- 建築物의 增·改築 土地의 地目變更
- 寡點株主의 所有株式 또는 持分에 對한
當該法人의 不動產 등

地方稅法 第105條

○ 用語의 定義(地方稅法 104條)

1. 不動產 : 土地, 建築物, 船舶, 鑛業
權 및 漁業權
2. 立木 : 地上의 果樹, 林木斗 竹木
3. 土地 : 地籍法에 의한 土地
(田·畠, 果樹園, 牧場用地, 林野, 坪,
工場用地, 公園, 運動場, 史蹟地, 墓地,
雜種地 등)

免 除 對 象

- 다음法人이 그 固有業務에 直接 使用
하기 為하여 取得하는 財產(단, 1年以
內에 目的變更時 追徵)
 - 農協(單位組合), 水協(漁村契·地區
別·業種別·水產物製造協同組合),
畜協, 農地改良組合
 -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 勞動組合, 人蔘協同組合 등

地方稅法 第110條의 3

非課稅 對象

- 國·道·市·郡, 地方自治團體組合과
外國政府의 取得
 - 地方稅法 第106條
-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其他 公
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為한 取得 등
 - 地方稅法 第107條
- 지부改良을 為한 改築 其他의 取得
 - 鑛山用에 供하기 為한 地上林木의 取

得等

- 土地收容 등으로 인한 代替 取得
-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 등
 - 法人의 合併 또는 共有權의 分離로 인한 取得
- 大都市외로의 移轉工場 등

— 地方稅法 第108條~110條의 2 —

50% 減免對象

- 다음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財產(단, 1年 以内에 目的變更時 追徵)
 - 證券監督院, 保險監督院, 韓國放送公社, 信用保證基金管理機關
 -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產協同組合中央會,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 등
 -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者가 2年 以上 營農에 從事한 者, 또는 農漁民後繼者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其準에 따라 直接 耕作目的으로 取得하는 農地(田, 畦, 果樹園, 牧場用地) 및 關係法令에 依據 農地를 造成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林野. 다만, 林野取得後 2年 以内에 農地造成하지 않을 시 輕減取得稅 追徵
 - 農水產物流通公社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에 直接使用하기 為하여 取得하는 不動產 등등

— 地方稅法 第110條의 4 —

○ 세액계산

-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조례, 신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 기타 사실상 취득가액 등)
(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 ① 취득물건 가액의 2%
-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글

프장,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 15%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공장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취득시 10%

(지방세법 제112조)

— 세율 적용: 법인이 토지취득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는 15% 추징(지방세법 제112조의 3)

登 錄 稅

課 稅 對 象

財產權 其他 權利의 取得·移轉, 變更 또는 消滅에 關한 事項을 公簿에 登記 또는 登錄時

— 地方稅法 第124條 —

免 除 對 象

- 取得稅 免除對象 法人の 登記 또는 登錄
 - 山林契, 山林組合, 山林組合中央會 (登記, 登錄日부터 1年 以内에 정당한 事由 없이 目的變更時 登錄稅 追徵)
- 山林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特殊開發地域안에서 山林開發을 目的으로 取得한 山林의 登記(다만, 山林開發義務不履行時 登錄稅 追徵)

— 地方稅法 第128條의 2 —

非課稅 對象

- 國家, 地方自治團體가 자기를 為하여 하는 登記 또는 登錄
- 登記, 登錄機關의 職權登記, 登錄
— 地方稅法 第126條
- 祭祀·宗教·慈善·學術·技藝·其他 公

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為한 不動產 登記(다만, 大統
領令이 定하는 大都市內의 登記는 除外)
※ 登記, 登錄後 1年以内에 정당한 事
由 없이 全部 또는 一部를 目的變更時
그 部分에 對하여는 登錄稅 賦課
- 地方稅法 第127條

- 土地收容 等으로 인한 代替取得 登記
- 地方稅法 第127條의 2
- 信託으로 인한 財產權의 取得 및 其他
登記, 登錄時
 - 委託者로 부터 受託者에게 移轉하는
財產權 取得의 登記, 登錄
 - 法人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合併 登記
 - 會社의 整理 등
- 地方稅法 第128條

50% 減免對象

- 取得稅 50% 減免 對象 法人の 登記, 登

錄(登記, 登錄日로부터 1年以内에 정
당한 事由 없이 目的 變更時 減免 登錄
稅 追徵)

○ 農協, 水協, 畜協中央會

地方稅法 第128條의 3

○ 세액계산

-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실취득가
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
액)

- 등록세율

- ① 상속에 의한 취득 : 농지 0.3%, 기타 0.8%
- ② 무상취득 : 부동산의 1.5%
- ③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
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인의 소유권 취득 : 부동산의 0.8%
- ④ 기타 취득 : 농지 1.0%, 기타 3%
- ⑤ 소유권보존등기 : 0.8%
- ⑥ 가등기 : 0.2%

○ 林業分野 主要稅制上 支援內容(要約)

惠 澤	對 象	根 據
所得稅免除 (法人: 法人稅)	조림후 5년 이상인 林木 - 영림계획, 지정개발사업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 산림소득특별공제 150만원	조감법 제38조
讓渡所得稅免除 (法人: 特別附加稅)	조림후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 林地 - '86. 12. 31 현재 소유자가 '91. 12. 31까지 양도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지정개발지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 법인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 법인이 소유임야의 交換, 分合으로 발생한 소득	조감법 제67조의 6 법인세법 제59조의 3
相續稅控除	조림후 5년 이상인 林地(9만평 이내), 林木 (공제한도 없음) -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指定開發地 -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 ※ 공제한도액 : 1억 5천만원	상속세법 제11조의 3, 4